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4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3 ~ 4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41
----------	-----------

제출연월일	2013. 6.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 의지에 부응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조정(안 제3조)

○ 행정과

- 사무이관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과

- 사무인수 : 하천에 관한 사항

- 사무이관 :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과

- 사무인수 :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이관 : 하천에 관한 사항

- 사무신설 : 안전관리 총괄조정,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등

나. 부서명칭 변경(안 제3조)

○ 건설교통과 → 건설과 ○ 재난관리과 → 안전총괄과

다. 부서 직제순위 조정(안 제3조)

○ 재난관리과 13위 → 7위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6.4 ~ 6.1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 경제과”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경제과”로 하고,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를 “건설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목 “건설교통과장”를 “건설과장”로 하며, 같은 호 다목·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천에 관한 사항

라.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제13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안전총괄과

가. 안전관리업무 총괄

나. 인적·사회적 재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다.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CCTV관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u>민원봉사과</u>, <u>경제과</u>, <u>문화관광과</u>, <u>산림녹지과</u>, <u>녹색환경과</u>, <u>건설교통과</u>, <u>도시건축과</u>, <u>재난관리과</u>를 둔다.</p> <p>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행정과장 가. ~ 마. (생략)</p> <p>바.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7. ~ 10. (생략)</p> <p>11. 건설교통과장 가. 건설행정에 관한사항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사항 다.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사항 라.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p> <p>12. (생략)</p> <p>13. 재난관리과장 가.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사항 나. 자연재해 및 하천에 관한사항 다. 인적재난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사항 라. 민방위에 관한사항</p> <p>제9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u>보건진료원</u>을 둔다.</p> <p>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u>보건진료원</u>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u>건설과,</u> 도시건축과-----</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가. ~ 마.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6. (현행과 같음)</p> <p>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p> <p>12. 건설과장 가. ----- 나. ----- 다. 하천에 관한 사항 라.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 사항</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7. 안전총괄과장 가. 안전관리업무 총괄 나. 인적·사회적 재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다.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CCTV관제에 관한 사항</p> <p>제9조(소장) ① ----- ----- ----- ---보건진료소장-----</p> <p>② ----- <u>보건진료소장</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소관사무) ① ~ ② (생 략) ③ <u>보건진료원</u>은 관할구역에서 「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제10조(소관사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진료소장</u>----- ----- ----- -----</p>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42
----------	-----------

제출연월일	2013. 6.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사회복지인력 확충,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퇴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55명(현행) → 658명(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41명(현행) → 644명(증 3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5명
 - 현행 : 531명(본청239명, 의회8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0명, 읍33명, 면136명)
 - 조정 : 536명(본청242명, 의회9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 2명
 - 현행 : 52명(본청24명, 의회3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 조정 : 50명(본청23명, 의회2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나. 예산조치 : 연 95백여만원(2014년 본예산 확보 예정)
- 다.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6.4 ~6.14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 중 “655명”을 “6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1명”을 “64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5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1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58명</u>-----</p> <p>-----</p> <p>1. -----<u>644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58 655	282 280	14	125	62	63	51 50	38	148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575 570	256 253	12 11	91	29	62	35 34	34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36 531	242 239	9 8	85	25	60	31 30	33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기능직		50 52	23 24	2 3	6	5	1	14	4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95	95	95	95	95	475
	소계(a)		95	95	95	95	95	475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95	95	95	95	95	475

3. 관련 의견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 7급 2명, 8급 1명
- 인건비 증가액 : 95백여만원
 - 기본급 91백여만원, 급식비 등 4백여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